

○ 의안제출

1.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 개정 이유  
구직제 개편으로 증원되는 별정직공무원 임용을 위한 자격기준을 추가 신설하기 위한 것임.
- 주요 내용
  - 9급상당으로 되어있는 공과금요원중 8급상당 임용 자격기준을 추가함.(별표 1, 제6호)
  - 구내식당 급식관리 영양사를 별정직 8급상당으로 임용할수 있는 자격 기준을 신설함.(별표 1, 제8호)
  - 옥외광고물 관리를 위한 광고물관리원을 별정직 7급상당으로 임용할 수 있는 자격기준을 신설함(별표 1, 제9호)
- 개정조례안 ( 13면에 실음 )

2. 서울특별시영등포구명칭및구역획정조례중개정조례(안)

- 제안 이유
  - 1967년이전 구획정리 사업시 하천부지로 구획정리사업에서 제외되고, 79년 10월 영등포구와 구로구 분구시 도림동이 신도림동으로 변경시 조정대상에서 제외된 지역으로
  - 행정동은 문래 1,2동장의 관할이나, 일부주민의 거주하는 도림동 430-2호는 주민들 임의로 문래동 1가 87번지로 주민등록을 신고 현재에 이르고 있어
  - 이지역 주민들이 문래동 지번으로 변경 조정해 줄것을 요구한바, 주민불편을 해소하려는 것임
- 주요골자
  - 문래동과 도림동사이를 가로지르는 경부선 철로를 기준으로하여 철로 이북지역을 문래동 1, 2, 4, 5, 6가에 각각 편입
- 변경내역

변 경 전 (도 립 동)			변 경 후 (문 래 동 1 가)		
지 번	지 목	면 적 m <sup>2</sup>	지 번	지 목	면 적 m <sup>2</sup>
440	도 로	985	98	도 로	985
443	〃	26	99	〃	26
444	〃	1,369	100	〃	1,369
445	〃	149	101	〃	149
739	〃	225	102	〃	225
740	〃	93	103	〃	93
741	제 방	350	104	제 방	350
742	〃	149	105	〃	149
432	답	17	106	답	17
741-1	도 로	33	107	도 로	33
429-4	〃	21	108	〃	21
430-1	제 방	463	109	제 방	463

430-2	대	1,263	110	대	1,263
429-3	〃	18	111	〃	18
429-1	도 로	97	112	도 로	97
430-3	제 방	211	113	제 방	211
429	하 천	1,425	114	하 천	1,425
429-2	〃	1,745	115	〃	1,745
428-4	〃	223	116	〃	223
428-7	〃	217	117	〃	217
428-2	〃	350	118	〃	350
428-6	〃	223	119	〃	223
428-1	〃	802	120	〃	802
427-1	제 방	505	121	제 방	505
427-3	〃	176	122	〃	176
427-2	〃	60	123	〃	60
426-3	〃	371	124	〃	371
425-3	답	10	125	답	10
425-2	〃	73	126	〃	73
425-4	〃	55	127	〃	55
425-1	〃	51	128	〃	51
426-2	제 방	403	129	제 방	403
426-1	〃	17	130	〃	17
계					12,175

변 경 전 (도 립 동)				변 경 후 (문 래 동 2 가)			
지 번	지 목	면 적 m <sup>2</sup>	지 번	지 목	면 적 m <sup>2</sup>		
747-1	구 거	2,023	62	구 거	2,023		
734-1	제 방	6,171	63	제 방	6,171		
743	〃	307	64	〃	307		
754	하 천	1,917	65	하 천	1,917		
753	〃	1,312	66	〃	1,312		
750	〃	1,395	67	〃	1,395		
748	〃	6,631	68	〃	6,631		
749	제 방	2,555	69	제 방	2,555		
745	〃	73	70	〃	73		
747	하 천	1,755	71	하 천	1,755		
746-2	제 방	451	72	제 방	451		

746-3	대	170	73	대	170
746-1	제 방	274	74	제 방	274
계					25,034

변경전 (도림동)			변경후 (문래동 4가)		
지번	지목	면적 m <sup>2</sup>	지번	지목	면적 m <sup>2</sup>
786	제 방	499	49	제 방	499
787	〃	701	50	〃	701
788	하 천	3,127	51	하 천	3,127
775-1	〃	3,934	52	〃	3,934
782	〃	1,722	53	〃	1,722
781	〃	936	54	〃	936
776	〃	522	55	〃	522
774	제 방	3,107	56	제 방	3,107
756	〃	5,563	57	〃	5,563
784-1	도 로	647	58	도 로	647
775	하 천	3,121	59	하 천	3,121
770	〃	2,377	60	〃	2,377
769	〃	2,992	61	〃	2,992
767-1	도 로	2,076	62	도 로	2,076
764	하 천	377	63	하 천	377
763	〃	1,511	64	〃	1,511
758	〃	668	65	〃	668
757	〃	132	66	〃	132
계					34,012

변경전 (도림동)			변경후 (문래동 5가)		
지번	지목	면적 m <sup>2</sup>	지번	지목	면적 m <sup>2</sup>
688	제 방	5,005	28	제 방	5,005
694-1	도 로	79	29	도 로	79
696	제 방	2,949	30	제 방	2,949
694-2	하 천	84,602	31	하 천	84,602
708	제 방	1,438	32	제 방	1,438
709	잡 종 지	221	33	잡 종 지	221
710	〃	258	34	〃	258
711-3	하 천	13,349	35	하 천	13,349

712	잡종지	7	36	잡종지	7
812-1	제방	149	37	제방	149
812-2	〃	17	38	〃	17
813	〃	298	39	〃	298
817-1	도로	621	40	도로	621
809-1	〃	2,397	41	제방	2,397
811-1	제방	182	42	〃	182
811-2	〃	53	43	〃	53
809-2	〃	23	44	〃	23
810-1	〃	2,175	45	〃	2,175
815	〃	2,026	46	〃	2,026
816	〃	1,035	47	〃	1,035
817	하천	3,491	48	하천	3,491
817-2	〃	6,397	49	〃	6,397
785-1	제방	2,570	50	제방	2,570
799-2	〃	443	51	〃	443
807	〃	509	52	〃	509
800	〃	1,640	53	〃	1,640
801	〃	1,170	54	〃	1,170
802	〃	43	55	〃	43
806	〃	89	56	〃	89
803	하천	1,633	57	하천	1,633
804	〃	1,200	58	〃	1,200
805	〃	13,630	59	〃	13,630
795	〃	1,021	60	〃	1,021
796	제방	754	61	제방	754
793	〃	463	62	〃	463
794	하천	711	63	하천	711
789	〃	582	64	〃	582
790	제방	440	65	제방	440
817-3	하천	76	66	하천	76
계					153,746

변경전 (도립전동)			변경후 (문래동 6가)		
지번	지목	면적 m <sup>2</sup>	지번	지목	면적 m <sup>2</sup>
683-1	하천	843	51	하천	843
683-2	〃	77,329	52	〃	77,329
686	제방	1,739	53	제방	1,739
계					79,911

· 개정조례안 ( 13면에 실음 )

3. 서울특별시영등포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 개정 이유

우리구 보건소수가 조례에 수수료 및 진료비의 별표중 유료접종 항목에 명시되지 아니한

유행성출혈열 및 렙토스피라증을 추가하여 국민 보건증진을 도모하고자 함.

· 주요내용

제2조 제2항 별표 수수료액중

- 4호“라”의 장티푸스 예방접종 단위중 “경구용” 삭제
- 4호“마”에 유행성출혈열 신설
- 4호“바”에 렙토스피라증 신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수수료 및 진료비)					제2조(수수료 및 진료비)				
1					1				
2 생 략					2 생 략				
3					3				
별표(수수료액표)					별표(수수료액표)				
구분	종 목	단위	금 액	비고	구분	종 목	단위	금 액	비고
4. 유료 접종	가. 일본뇌염	1ml	가. 보건소장의 유료접종 수 료는 약품의 최근 구입가 격으로 한다. 단, 10자리 이 하의 금액은 1원 이상 49원 이 내의 경우에는 50원으로 하 고 51원 이상 99원 이내의 경우에는 100원으로 한다.		4. 유료 접종	가. 일본뇌염	1ml	가. 보건소장의 유료접종 수 료는 약품의 최근 구입가 격으로 한다. 단, 10자리 이 하의 금액은 1원 이상 49원 이 내의 경우에는 50원으로 하 고 51원 이상 99원 이내의 경 우에는 100원으로 한다.	
	나. 홍역, 볼거 리, 풍진	혼합백신 1회분	나. 전염병예방법 규정에 의하 여 지정받은 병, 의원의 접 종수수료는 약품 공급가격 과 의료보험법 제35조의 규 정에 의한 진료가 기준중 생물학적 제제 주사료를 가 산한 금액으로 하되 일본뇌 염접종은 피하근육 주사를 적용한다. 단, 10자리 이하 금액의 산정은 “가”항 단서 의 규정에 준한다.			나. 홍역, 볼거 리, 풍진	혼합백신 1회분	나. 전염병예방법 규정에 의하 여 지정받은 병, 의원의 접 종수수료는 약품공급가격 과 의료보험법 제35조의 규 정에 의한 진료수가 기준중 생물학적 제제주사료를 가 산한 금액으로 하되 일본뇌 염 접종은 피하근육주사를 적용한다. 단, 10자리이하 금액의 산정은 “가”항 단서 의 규정에 준한다.	
	다. 간염	1ml	다. 전항에 의한 지정병의원에 의 유료접종 약품공급가격 은 구입가격으로 하며 1회 용 주사기를 무료로 공급할 수 있다. 단, 매회 공급총액 의 10자리 이하 금액의 산 정은 “가”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다.			다. 간염	1ml	다. 전항에 의한 지정병의원에 의 유료접종 약품공급 가격 은 구입가격으로 하며 1회 용 주사기를 무료로 공급할 수 있다. 단, 매회 공급총액 의 10자리 이하 금액의 산 정은 “가”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다.	
	라. 장티푸스	경구용 1인분				라. 장티푸스	1인분		
						마. 유행성 출혈열	0.5ml		
						바. 렙토스 피라증	1ml		

· 개정조례안 ( 14 면에 실음)

서울특별시영등포구조례제 호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별정직공무원임용자격기준중 6. 행정관리분야에 다음사항을 추가하고  
7. 구의회관련분야 다음에 8. 위생분야와 9. 기타분야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행정관리분야

직명(위) 및 업무구분	직급	직무내용	임용자격	근거
공과금요원	8급상당	1. 공과금자료의 정리보존 2. 공과금 업무 분석	· 전문대학이상 졸업자로서 6월 이상 전산교육을 이수하고 공과금 업무경력이 2년이상 인자 · 9급(상당)이상 공무원으로서 공과금경력이 1년6월이상인자	

8. 위생분야

직명(위) 및 업무구분	직급	직무내용	임용자격	근거
영양사	8급상당	구내식당급식관리	· 영양사자격증소지자	

9. 기타분야

직명(위) 및 업무구분	직급	직무내용	임용자격	근거
광고물관리원	7급상당	육외광고물 관리	· 4년제대학이상 졸업자로서 관련학과를 이수한 자 · 전문대학이상 졸업자로서 관련분야 근무경력이 4년이상인 자 · 고등학교이상 졸업자로서 관련분야 근무경력이 6년이상인자	

부 칙  
이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영등포구조례제 호

서울특별시영등포구동명칭및구역획정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영등포구동명칭및구역획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서울특별시영등포구동명칭및구역획정조례중 (별표) 개정 연혁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표)

< 개정 연혁표 >

- 도림동 440번지를 기점으로 746번지의 3호 및 429의 1호를 연하는 남쪽지역중 425번지 3호를 기점으로 한 철로 이북지역을 문래동 1가에 편입
- 도림동 767의 1호 남단을 기점으로하여 747의 1호 북단에 이르는 남쪽 지역중 철로를

- 기준으로 문래동 1가에 편입되는 지역을 제외한 지역을 문래동 2가에 편입
- 도림동 764의 1호 복단을 연하는 선을 기점으로하여 790번지, 789번지 805번지 남단을 연하는 남쪽지역중 철로를 기준으로 문래동 1,2가에 편입되는 지역을 제외한 지역을 문래동 4가에 편입
- 도림동 688번지 복단을 연하는 선을 기점으로 하여 694의 2호 복단을 연하는 선의 남쪽지역중 문래동 1,2,4가에 편입되는 지역을 제외한 지역을 문래동 5가에 편입
- 도림동 688번지 복단을 연하는 선을 기점으로하여 694의 2호 복단을 연하는 선의 북쪽지역을 문래동 6가에 편입한다.

부 칙  
이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영등포구조례제 호

서울특별시영등포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영등포구보건소수가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2항 별표를 다음과 같이 삭제 및 신설한다.

- 4호 “라”의 장티푸스 예방접종 단위중 “경구용” 삭제
- 4호 “마”의 유행성출혈열 신설
- 4호 “바”에 렙토스피라증 신설

부 칙  
이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서면질의 (요지)

1. 여의도 윤중로 가로수인 벚꽃나무 생육상태 불량에 대한 관리 방안에 대한 질의 (1990. 7. 20.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시 홍상기의원, 최수영의원 질의)
2. '90년도 종합토지세 부과 조정현황(주거지역, 공업지역, 준공업지역, 상업지역으로 구분)에 대한 질의
3. '91년도 9월말까지의 지방세 징수현황(세목별로 구분 징수실적)에 대한 질의
4. '91년도 시유지 필지수, 면적 및 시유지 임대료 부과징수현황에 대한 질의
5. 공공용지 임대절차 및 임대대상자 선정근거에 대한 질의
6. 주차장 설치 근거 규정에 대한 질의
7. 공공건물 관리규정 및 임대료 징수현황에 대한 질의 (위2~7항, 1991. 9. 20. 권혁필의원 제출, 1991. 9. 20 영등포구청에 송부)

○ 서면질의에 대한 답변서 제출 (요지)

1. 여의도 윤중로 벚꽃나무 관리 방안  
여의도 윤중로 벚꽃나무가 조기 낙엽 현상등이 발생 수목 병해충 전문가인 나무종합병원(원장 강전유)에 진단의뢰한바 결과를 참고하여 다음과 같이 관리코자 합니다.

다 음

나무종합병원			
진 단 내 용	처 방 내 용	조 치 사 항	향 후 조 치 계 획
종합진단 도로포장의 열기, 차량의 공해 등과 강변의 습기등 만성적 공해에 의한 수세 쇠약 조기 낙엽 현상		고행복합비료 2000kg확 보	수세회복을 위하여 '91. 11월 고행복합 비료 시비
1. 병충해 발생 · 응애 · 각지벌레 · 천공성 갈반병등	다니톨(발생초 기)스프라사이드 살포	약제살포 1차 5월말 2차 6월중 3차 8월초 (스프라사이드, 디밀린, 호리마트 디프수회제)	발생 즉시 약제살포
2. 생리적 피해 · 강변인 관계로 바람과 습 기에 의하여 생리적 피해가 심함 · 공해의 만성적 피해가 있 음	질산칼슘 및 질산 가리 살포		'92. 5월-7월 피해 에 따라 살포
3. 수간 및 가지의 부패 · 수간이나 가지에 수피 고 사부분 많고 확산되고 있 음	부패부제거 살균, 살충, 방부, 방수 인공수피등 외과 수술 처리	'92예산확보코자 자료 산출중 소요예산 22,890천원	'92 본예산에 반영 외과적 수술 및 뿌 리 영양제 투입

(1991. 8. 22. 영등포구청으로부터 접수되어 1991. 8. 23. 홍상기, 최수영 의원에게 송부함)

2. '90년도 종합 토지세 부과조정 현황

'90. 종합토지세 부과 현황은 토지형태별로 종합합산, 별도합산, 분리과세 3가지 유형으로 부과되며,  
 주거용지는 종합합산과세, 상업용지는 별도합산, 공장용지는 분리과세 및 별도합산으로 부과되므로 지역별 부과조정 현황은 별첨과 같이 부과되었음을 답변드리며 우리구는 상업지역이 많이 분포되어 주거, 공장 지역에 비하여 전체 세액의 50%를 차지하고 있으며 주거지역은 전체 세액 37%를 차지하고 있음을 답변드립니다.



'90 지역별 종합토지세 부과현황

(단위 : 금액 천원, 면적 천㎡)

지 역 별	부 과 건 수	금 액	지 역 면 적
계	78,808	10,865,534	8,909
주 거 지 역	51,916	3,980,952	5,313
공 업 지 역			
준 공 업 지 역	14,875	1,433,989	1,307
상 업 지 역	12,017	5,450,593	2,289

3. '91년도 9월말까지의 지방세 징수 현황

- 지방세중 우리구에서 부과징수되는 세목으로는 시세가 8개세목 구세가 4개세목으로 시, 구세점유비율은 시세가 81.9% 수세가 18.1%로 구세의 점유율이 저조한편입니다.
- 세액으로 보면 주민세, 등록세, 종토세등이 시, 구세수입의 주종을 이루고 있으며 징수율로 보면 자동차세, 면허세, 주민세가 90%에 미달하며 재산세, 등록세는 97%이상의 좋은 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 세목별 부과 징수실적은 별첨과 같으며 현제가 익월에 집계되는 관계로 8월말까지의 실적으로 답변드립니다.

단위 : 천원

세 목 별	건 수	부 과 액	징 수 액
취 득 세	5,594	11,396,929	5,479건/11,134,733
등 록 세	36,918	20,273,555	36,851건/20,213,305
도 시 계 획 세	69,843	3,028,462	66,973건/ 2,983,107
소 방 세	63,234	3,168,495	60,891건/ 3,006,884
농 지 세	1	30,370	1건/ 30,370
차 량 취 득 세	20,304	6,563,519	17,514건/ 5,934,585
주 민 세	221,340	28,122,860	185,043건/26,673,967
자 동 차 세	137,253	7,099,255	126,442건/ 6,606,477
과 년 도	205,272	10,744,241	7,587건/ 768,835
재 산 세	80,034	6,256,043	76,296건/ 6,114,934
종 합 토 지 세	560	295,092	388건/ 55,894
면 허 세	104,208	2,365,681	86,635건/ 2,011,998
사 업 소 세	5,164	4,219,844	5,111건/ 4,211,709
과 년 도	66,357	800,341	668건/ 45,778
계	743,949건	92,820,105	667,624건/88,977,963

4. '91년도 사유지, 필지수, 면적 및 사유지 임대료 부과징수 현황

- '91년 사유지 및 임대료 부과 징수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		음		
필지수	면적(m <sup>2</sup> )	부과액	징수액	비고
25	50,331.73	11,032,000원	11,032,000원	

5. 공공용지 임대절차 및 임대 대상자 선정 근거

- 질의하신 공공용지 임대절차 및 임대 대상자 선정 근거는 아래와 같습니다.
- 가. 공공용지 임대 절차
  - 대부신청 → 대상재산 조사 → 공유재산 심의회 개최(대부여부 결정) → 감정평가 → 공유재산 심의회 개최(가격결정) → 대부계약 체결통보 → 대부 계약 체결
- 나. 임대대상자 선정근거
  -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8조 및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23조의 규정에 의거 대부하고 있습니다.

6. 주차장 설치 근거 규정

- 1. 노상주차장 설치는 주차장법 제7조 규정에 의거 설치하며 민영노외 주차장 설치는 주차장법 제12조 규정에 의거 설치할수 있음

7. 공공건물 관리규정 및 임대료 징수현황

(공공건물 관리규정)

- 조례명 : 영등포구 조례 제50호 (서울특별시영등포구 공유재산관리규정)

- 공공건물관리규정
  - 제2장 행정재산의 관리 (제10조 --- 제30조)

(임대료 징수현황)

- 관리규정
  - 국유재산법 시행규칙(재무부령 제1841호 91. 1. 31)
  - 공유재산관리조례 제22조4항2호(영등포구조례152호 91. 4. 13)
  - 임대현황
    - 구내이발소(지하1층 39.48m<sup>2</sup>=11.96평)
    - ※ 연간임대료 : 1,200,000원

(참 고)

- 공유재산관리조례 제22조 4항2호 : 연간대부료는 당해 재산평정가격의 100분의40으로 한다 (청사의 구내재산으로서 공익상 필요하거나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목적으로 하는 재산)

(위2~7항, 1991. 10. 7. 영등포구청으로부터 접수되어 1991. 10. 9. 권혁필의원에게 송부함.)